

## 코리아연구원 논평 15호 (2010년 12월 8일)

Korea National Strategy Institute

www.knsi.org/ ☎733-3348, 팩스733-3358/ 100-855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86-28 우리함께회관 4층/ knsi@knsi.org

### 국가인권위의 대북방송 권고의 비인권성 혹은 정치적 기회주의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 6일, 제18차 전원위원회에서 김태훈 등 6명의 위원이 제출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부여 권고’ 안을 찬성 6표, 반대 2표로 의결했다. 이 권고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과 국방부장관 등 정부에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다.

이 권고에서 담고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은 이미 지난 4월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바 있어, 같은 권고를 또다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문을 사고 있다. 권고에는 미국, 일본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만이 입법을 지체하고 있는 것은 심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 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실질적 인권개선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고의 핵심은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함양을 명분으로, 정부의 민간 대북방송 지원 등 “모든 매체를 통하여” 외부정보를 북한에 주입하는데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였으나 인권위의 관할 범위와 실효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 각각 보류, 부결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고도 정책수단의 실효성, 현 남북관계, 북한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역할 등에 걸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먼저,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가인권위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의 문제이다. 국가인권위는 1년여 동안의 내부 논의와 외부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6년 12월 11일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을 발표하였다. 거기에는 북한인권 접근하는 원칙으로 ▷인권의 보편성, ▷평화적 방법, ▷실질적 개선, ▷정부와 시민사회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제시되어 있고, 정책제안으로 ▷인권의 보편성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 ▷인도적 지원을 통한 생존권 보장,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및 국내정착,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등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객관적인 인권실태 조사 등을 언급하고 있다. 입장 발표를 전후로 국가인권위는 꾸준히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벌이며 북한인권정책을 모색해왔고, 그 일환으로 북한인권포럼도 열고 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간 분야별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로드맵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금번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북한인권에 관한 인권위의 기본 입장과 어떤 연속성 하에서 제시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로드맵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검토 작업도 없이 제시되었고, 제시된 북한인권 정책수단의 선정 및 그 효과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하였고, 두 차례의 전원위원회 논의에서 보듯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 방법을, 인권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인사의 인권위원 임명에 즈음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점, 곧 의사결정의 민주성이 크게 결여된 점을 일차적인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의 성급한 권고는 그동안 광범위하게 전개해온 관련 용역연구 결과들과 여론수렴 내용을 걸치레로 삼은 졸속 결정이라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사실 국가인권위가 ‘북한 내의 인권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금번 권고에는 “북한인권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라고 하고 있지만,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에는 “북한 또는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국적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인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국가인권위가 헌법 등을 근거로 북한인권 전반에 관심을 갖고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할 수는 있으나, 북한 내의 인권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권고는 법적 관할범위와 정책 실효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권고 결정이 내려진 시점 또한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권고문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권고안의 제출 배경으로 들면서, 이를 북한인권의 열악함과 북한체제의 성격(‘공포의 나라’)과 연결 짓고 있다. 이 세 가지 문제들 사이의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 자체가 커다란 논의의 주제라는 점을 접어두더라도, 국가인권위가 남북간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 상태에서 대북방송을 골자로 하는 정책 권고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병철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에 일조해 인권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의 사퇴압력을 피하려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의 대북방송 권고는 대북 전단 살포에 이어 심리전의 일환으로 대북방송 재개를 생각하고 있는 정부의 대북제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그것은 북한인권 개선은커녕 그 필요조건인 남북간 신뢰 조성에 역행하는 처사임에 틀림없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의 대북방송 주장은 현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여 조직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전체 구성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 국가인권위는 북한인권을 개선할 방법이 대단히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대북방송을 중시하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물론 권고가 북한인권법 제정도 언급하고 있지만, 법안은 투명성 제고를 조건으로 한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 특사의 외교적 활동, 남북관계 주무부서인 통일부의 북한인권정책 수립 및 집행 등을 담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민간 대북방송 지원 권고는 다양한 북한인권 개선 방법 중 북한을 자극하거나 압박하는 방법에 치중되어 있어 편향적이라는 우려를 살 수 있다. 나아가 그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이 저조한 사실과 겹쳐져 실효적인 북한인권 개선에 얼마나 이바지 할 지도 의문이다.

요컨대, 국가인권위의 대북방송 권고는, 북한인권은 남북관계 악화나 한반도 긴장 상태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몰이해이자 북한인권 개선에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애써 무시하는 편협한 인식의 발로임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그런 인식의 위험성과 북한인권에 미칠 부작용은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바와 같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후퇴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많은 인권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고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인권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급기야 현 위원장 하에서 국가인권위는 인권위에서 농성하고 있는 장애인인권단체 회원들을 해산시켜 달라고 경찰에 요청하였다. 국가인권위 설립 이래 유례없는 일이다. 그런 상황에서 현 위원장 체제 하의 인권위가 대북방송을 골자로 내놓은 북한인권 정책 권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국민들과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한국전쟁 이후 최악이고 이명박 정권이 대북 압박정책을 계속 천명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인권위가 본연의 국내 인권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자극적인 북한인권 개선안을 내놓았다면, 국가인권위는 조직의 위상 전환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위원회로 탈바꿈을 하든지, 아니면 일차적 사명인 국내인권 신장을 위해 적극 나서든지. 적어도 현병철 위원장이 금번 대북방송 권고로 사퇴 압력을 피하고 정부에 더욱 코드를 맞추려 한다면 국가인권위 조직 자체와 북한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2010/12/08)



※코리아연구원은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 (02-733-3348, knsi@knsi.org) 또는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코리아연구원을 후원하실 수 있으며, 후원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